

#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~~28~~<sup>28</sup>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. 11. ~~28~~<sup>28</sup>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2.12.13.)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정진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법(2002. 3.25)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(2002. 6.15)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을 시장, 시의회,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주무담당국장 등 7인으로 하던 것을 시장, 시의회에서 추천하는자 각 2인과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등 7인으로 조정함 (안 제8조 제1항)
-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,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, 공인회계사 및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 위원의 자격을 정함(안 제8조 제2항)
- 공단의 임·직원, 도·시의회의원 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없다는 제한 규정을 정함 (안 제8조 제3항)
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을 정함(안 제8조 제3항)
-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장 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다고 조정함(안 제 8조 제4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내용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위원 자격 요건중 4급이상 퇴직자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것임.공직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수정함이 어떤지?	○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
○ 안제8조제2항의 비상임 이사를 제외함이 타당하지 않은지?	○ 이사회는 당연직 위촉직이 있는데 시공무원 2명의 비상임 이사중 당연직만 제외해도 될것입니다
○ 이사장 후보의 조사업무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함이 타당한지?	○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해 잘 모를 때 의뢰하고자 하는데 강제규정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

### 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 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  -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 요지

별첨

7. 소수의견요지

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제63호
의결연월일	2002.12.24 (제101회)

제안년월일 : 2002년 12월 13일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공단 이사장 추천 표준안에 의거 “이사장 후보의 추천절차”를 신설하여 이사장후보 자격 조항과 개정안 제8조의 내용 중 이사장후보추천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“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”에서 “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”으로 조정함(안 제8조제5항)
- 이사장후보의 자격조항 신설(안 제8조의2제1항)
-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 추천하도록 함.(안 제8조의2제2항)
- 이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의2제3항)

##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안 제8조제5항중 “3분의 2이상의 출석”을 “과반수의 출석”으로 한다

안 제8조의2(이사장후보의 추천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②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③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</p> <p>④추천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.</p>	<p>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</p> <p>④추천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추천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장 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</p> <p>④(삭제)</p>
<p>⑤(생략)</p>	<p>⑤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⑤ .....</p> <p>..... 과반수의 출석 .....</p> <p>....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&lt;신설&gt;</p>	<p>제8조의2(이사장 후보의 추천)</p> <p>①추천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추천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

[수정안 포함]

##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①이사장추천위원회(이하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시장,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2인과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하고, 추천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되며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  2.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
  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  4. 공인회계사
  5.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②당해 공단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, 도·시의회 의원, 부천시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조제3항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”로 하고, 제8조제5항중 “3분의 2 이상의 출석”을 “과반수의 출석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제8조의2(이사장후보의 추천)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②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③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①이사장추천위원회(이하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시장,시의회,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주무담당국장등 7인으로 구성하되,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</p>	<p>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①----- 시장,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2인과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추천된 자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되며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</p> <p>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경영전문가</li> <li>2.경제관련 단체의 임원</li> <li>3.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</li> <li>4.공인회계사</li> <li>5.공기업 경영에 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</li> </ol>
<p>②당해 공단의 임·직원 또는 법제 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</p>	<p>②당해 공단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, 도·시의회의원,부천시 소속공무원 또는 법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</p>
<p>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</p>	<p>③----- 하며,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</p>
<p>④추천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</p>	<p>④ &lt;삭제&gt;----- <del>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장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다</del></p>
<p>⑤~⑧(생략)</p>	<p>⑤~⑧ (현행과 같음)</p>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⑤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⑥~⑧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⑤ ----- 과반수의 출석----- -----</p> <p>⑥~⑧ (현행과 같은)</p> <p>제8조의2(이사장 후보의 추천) 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 ②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 ③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